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7. 7 선고 2019가단10146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

담당변호사 김규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진, 황현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

담당변호사 오화석, 박문학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환주

변 론 종 결 2020. 4. 28.

판 결 선 고 2020. 7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08. 1. 1.부터 부산 북구 C 대 496㎡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(이하 'D건물'이라 한다)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, 2015. 8. 21.경 E에게 D건물을 매도하였다.

나. 한편, 원고와 피고는 2013. 12. 5. F, G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D건물을 양도하고, F, G는 부산 북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I건물'이라 한다)과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(이하 'J건물 K호'라 한다)를 양도하고 교환차액 1억 3,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(이하 '이 사건 교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3. 12. 13. D건물 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, 그 무렵 원고와 피고 명의로 I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I건물을 인도받아 사용, 수익하였다.

다. 그런데 F, G가 교환차액 1억 3,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, 원고와 피고는 F,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612호로 매매잔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소송에서 2015. 7. 15.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이 성립되었다.

1.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.
2. G는 원고와 피고에게 D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. 12. 13. 접수 제8512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3. 원고와 피고는 제5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I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G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4. J건물 K호는 F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6375호 판

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포기한다.

5. F, G는 원고와 피고에게 I건물 수리비로 7,000만 원을 2015. 8. 31.까지 지급한다.

6. 원고와 피고는 F,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7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라.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8. 9. 21.경 I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무렵 G에게 이를 인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가 D건물과 I건물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동안 원고가 이를 유지,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중 일부인 합계 261,243,671원(= D건물 210,770,328원 + I건물 50,473,343원)의 2분의 1인 130,621,835원(= 261,243,671원 × 1/2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D건물의 유지,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2011. 8. 11. 피고가 원고보다 21,126,160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한차례 정산이 이루어졌고,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(을 제2호증의 1 내지 4)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D건물과 I건물의 유지, 관리비로 107,438,7567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1 내지 3, 을 제2호증의 1 내지 4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원고와 피고는 2011. 8. 11. D건물의 유지, 관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와 피고 중 투자금액이 적은

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당시 원고가 1억 7,200만 원, 피고가 193,126,160원을 각 D건물의 유지, 관리비로 지출하여 피고가 원고보다 21,126,160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정산결과가 나온 점,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교부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(을 제2호증의 1 내지 4)에 기하여 피고가 D건물과 I건물의 유지, 관리비를 정산한 결과, 원고가 피고에게 107,438,756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점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(갑 제1호증)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교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(을 제2호증의 1 내지 4)의 내용이 다름에도, 원고는 수입과 지출 명세서(갑 제1호증)상 수입과 지출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춘근